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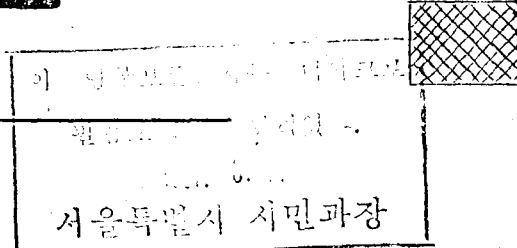
제 319 호

1972. 11. 2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장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738 호 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3

제 739 호 서울특별시 교통조정심의회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3

제 740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4

◎ 공 고

제 265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장관소유자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38 호

장관소유자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장관소유자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 중 "1972년"을 "1973년"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	-----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좌 동</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개 정 이 유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군용에 공하는
장관소유자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기한
을 금번 (세정 1234.9 - 12365 72.10.
25)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현행
72.12.31에서 73.12.31까지 1년간
더 연장 면세 조치함으로써 지속적인
전투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함.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통조정심의위원회조례 폐지에 관한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39 호

서울특별시교통조정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1972년 5월 15일자 서울특별시조례제
707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교통
조정심의위원회조례를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금번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정개발담당관제의

발족으로 도시교통관광 및 운수시책에 관한 사항은 제3개발담당관이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조정심의 위원회는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40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조중 " 1. 행정개혁분과위원회" , " 5. 공해대책분과위원회" , " 6. 위생분과위원회" , " 7. 방역대책분과위원회"

와 " 12. 수출진흥분과위원회" 를 삭제하고 " 2, 3, 4" 를 1, 2, 3" 으로하고 " 3" 다음에 " 4. 보건분과위원회" 를 삽입하며 " 8" 을 " 5" 로 하고 " 9. 부녀아동보호분과위원회" 를 " 6. 부녀복지분과위원회" 로 하며 " 10. 물가대책분과위원회" 를 " 7. 유통체계개선분과위원회" 로 하고 " 11" 을 " 8" 로 " 13, 14, 15, 16, 17," 을 " 9, 10, 11, 12, 13," 으로하며 " 13" 다음에 " 14.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 , " 15. 비상계획분과위원회" 및 " 16. 소방분과위원회" 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p>제3조(위원회)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개혁분과위원회 2. 도시개발분과위원회 3. 주택분과위원회 4. 건설분과위원회 5. 공해대책분과위원회 6. 위생분과위원회 	<p>제3조(위원회)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분과위원회 2. 주택분과위원회 3. 건설분과위원회 4. 보건분과위원회 5. 사회복지분과위원회 6. 부녀복지분과위원회

현 행	개 정
7. 방역대책분과위원회 8. 사회복지분과위원회 9. 부녀아동보호분과위원회 10. 물가대책분과위원회 11. 연료대책분과위원회 12. 수출진흥분과위원회 13. 공업진흥분과위원회 14. 교통분과위원회 15. 관광분과위원회 16. 환경분과위원회 17. 상수도분과위원회	7. 유통체계개선분과위원회 8. 연료대책분과위원회 9. 공업진흥분과위원회 10. 교통분과위원회 11. 관광분과위원회 12. 환경분과위원회 13. 상수도분과위원회 14.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 15. 비상계획분과위원회 16. 소방분과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이 유</p> 1. 1972.8.31자(규칙제 1242호)로 시정개발담당관제의 발족과 공해방지법 제13조에 의한 공해방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동일기능을 담당하는 수도행정자문위원회중 행정개혁분과위원회 및 공해대책분과위원회와 제반 시책을 중앙관서에서 관장함으로 인하여 별 실효성이 없는 수출진흥분과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2. 상호 그 기능이 유사한 위생분과위원회와 방역대책분과위원회는 이를 폐합하여 보건분과위원회로 하며 3. 부녀아동보호위원회의 기능중 아동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므로 동 기능을 삭제 부	녀복지분과위원회로 하고 4.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유통질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통체계개선분과위원회라 명칭 변경하며 5. 지하철건설에 관한 계획 및 조사연구를 위한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와 민방위체제의 확립을 위한 계획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계획분과위원회 및 소방업무의 이관에 따라 소방행정에 관한 계획 및 조사연구를 위한 소방분과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공 고

1972. 11. 2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65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준공

1.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봉천동 산 17-3의 2 필지

1.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2. 사업명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3. 사업면적 : 50,551.6 평

4. 사업시행자 : 국회 법사 주택단지 주택조합장 김 철

2.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사업기간 : 착공 - 70. 10.17

준공 - 72. 4.30.

6. 준공년월일 : 1972.11.20.

7. 준공도면 : 별첨 도면 (생략)